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8.>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물을 말한다.

5~9. 삭제 <2018.1.8.>

②~⑥ 삭제 <2018.1.8.>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과 기타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8.>

제4조의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신설 2018.1.8.]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18.1.8.>

④ 삭제 <2018.1.8.>

⑤ 삭제 <2018.1.8.>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8.>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와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와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심의 및 시행)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제12조(협조 요구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2.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견 개진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위원,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의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유지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단, 위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총장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

할 때에는 미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8.>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5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정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은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

위

- ②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8.1.8.]

제16조(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1.8.>

제16조의2(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1.8.]

제16조의3(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관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대학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8.]

제16조의4(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교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8.]

제17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8.>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8.>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4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15조의2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제17조의 진실성 검증 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8.1.8.]

제2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1.8.>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빙 자료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8.>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2018.1.8.]

제21조의2(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총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

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본조신설 2018.1.8.]

제21조의3(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재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8.]

제22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 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3조(판정 및 이의신청) ① "판정"은 총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8.]

제2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8.]

제25조 삭제 <2018.1.8.>

제26조 삭제 <2018.1.8.>

제27조 삭제 <2018.1.8.>

제4장 결과에 대한 조치

제2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1.8.>

1. 연구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한 기록은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